

예 산 총 칙

2008년도 추경 2 회

제 1 조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1,032,800,000	30,984,000
일반회계		862,230,000	25,866,900
	일반회계	862,230,000	25,866,900
기타특별회계		62,600,000	1,878,000
	주택사업특별회계	620,000	18,600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15,400,000	462,000
	주민소득지원기금특별회계	1,650,000	49,500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5,240,000	157,200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120,000	3,600
	치수사업특별회계	1,550,000	46,500
	저소득주민주거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1,330,000	39,900
	농공지구관리특별회계	410,000	12,300
	택지조성사업특별회계	1,310,000	39,300
	청소사업특별회계	32,350,000	970,500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710,000	21,300
	기반시설특별회계	1,600,000	48,000
	수질개선특별회계	310,000	9,300
공기업특별회계		107,970,000	3,239,100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61,500,000	1,845,000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46,470,000	1,394,100

제 2 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7,504,953천원으로 한다.

제 4 조 일반회계 지방채차입한도액은 55,000,000천원으로 한다.

제 5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 및 다음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

1. 공무원의 기본급 및 수당, 기타직 공무원의 보수
2. 공공요금 및 제세, 급량비, 복리후생비, 직급보조비
3. 배상금, 국선번호료, 법정보상금
4. 지방채 원리금과 금리변동으로 인한 이자 지출경비
5. 재해 대책비
6. 반환금
7. 선거관련 경비